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추가 〉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10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추가	2

I. 개요

1.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1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5.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수급자격의 정기적 확인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 ----- ----- ----- ----- -----.

가. ~ 허.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고.</u> (생 략) 2. ~ 7. (생 략)	가. ~ 허. (현행과 같음) <u>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u> <u>특별법」</u> <u>노. 「노인·장애인 등 사회</u> <u>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u> <u>에 관한 법률」</u> <u>도.</u> (현행 고목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회복지 분야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보임.

□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 및 관리체계 등 각종 권리와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특정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이러한 공통적인 관리체계와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로는 시설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시설장 상근, 운영위원회 설치 및

- 운영, 후원금품대장 등 서류 비치, 수용인원의 제한 등이 있고,
-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으로는 시설 통합·설치 운영 시 공통 이용 시설 및 인력 기준 특례 적용,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개별법령 등 근거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 및 세제혜택 등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추가 시 적용사항 >

내용	관련 법률 및 지침
○ 사회복지사업 위탁 등 수행 비영리법인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생략)
○ 사회복지사(1급·2급) 자격 취득 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 - [별표3]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급 응시가능 - [별표1]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급 취득가능
○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 수행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 (기관요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1급자격 + 3년 실무경험 또는 2급자격 + 5년 실무경험 필요
○ 지방공무원 특수 직무수당 인정 가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 - (요건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월7만원) - (요건②) 요건① 지급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시설 근무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80% 산정 요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35 > ① (80% 인정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자료: 보건복지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¹⁾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²⁾ 역시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즉, 두 법률 모두 사회복지서비스 자체를 제공하기보다는 급식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라는 행정적·기술적 지원체계를 규율하는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규율 목적 및 체계를 고려할 때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 수행기관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적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각종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미 개별 법령에 따른 운영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 특성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관리체계가 중첩될 경우 행정적 부담과 규제가 가중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급식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권리·의무 및 관리체계가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시행령에 해당 법률들을 추가³⁾하여 그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은 급식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는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가 상이하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시 기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다 규제 강화가 우려되므로 개정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 지원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찬성함. 본 개정안을 통해 해당 시설 내 식생활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원 등의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실익이 있을 것이라 사료됨. 또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동의함.
- (대한영양사협회) 「어린이식생활법」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이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려는 본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7